

강의료 지급 규정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1983.3.1		16	2015.2.3	
2	1985.2.6		17	2016.10.28	
3	1995.8.1		18	2017.6.19	
4	1996.3.1		19	2018.3.1	
5	1997.3.1		20	2019.8.26	
6	1997.9.1		21	2020.3.9	
7	2004.3.1		22	2021.3.29	
8	208.8.13		23	2021.4.26	
9	2009.6.1		24	2023.1.16	
10	2009.11.13		25	2023.12.18	
11	2010.10.8		26	2024.11.4	
12	2012.1.31		27		
13	2012.10.31		28		
14	2013.7.30		29		
15	2014.8.6		30		

강의로 지급 규정

[종전 강사료지급규정에서 강의로지급규정으로 명칭변경 2019.8.26.]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의 전임교원, 강사 및 비전임교원 등에 대한 강의로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8.26.>

제2조 (강의구분) 본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강의, 실습강의, 특별강의 및 사이버강의로 구분한다. <개정 2008.8.13.>

1. 일반강의는 평상수업을 말한다.
2. 실습강의는 실험, 실습, 실기 등의 수업을 말한다.
3. 특별강의는 비정규학기의 강의 또는 본 대학교의 명의로 교내 및 교외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정기적 수업을 말한다.
4. 사이버강의 : 인터넷 환경 등의 정보 통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교육 정보를 웹 형태로 저장, 관리, 유통하고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한 시간에 가능한 장소에서 영상·음향·문서 등으로 제공되는 수업을 말한다.<신설 2008.8.13>

제3조 (책임시간) 전임교원의 책임시간과 보직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8.13.>

1.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 <개정 2015.2.3., 2016.10.28., 2017.6.19.>
 - 가. 전임교원은 대학원 강의를 포함하여 학년도별 연간 주당 15시간 이상을 강의하여야 하며, 이 때 학부 강의는 이론강의를 기준으로 학기별 주당 3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단, 학부 이론 강의 시수 산정 시 담당교원의 시수를 인정하지 않는 강좌의 시수는 포함하지 않는다. <전문개정 2024.11.4.>
 - 나. 전임교원이 당해 학년도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시간은 다음 학년도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1.4.>
 - 다. 전임교원이 당해학기 학부책임강의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시간은 동일 학년도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
 - 라.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부족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강의시간은 초과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 - 마. 전임교원의 주당 담당시간은 연간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교육중점교원(어학담당 외국인교원 포함)은 예외로 하며, 그 밖에 교과운영 등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24.11.4.>
2. 보직교원 등 책임시간을 감면받는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<별표 2>와 같다. <개정 2015.2.3., 2018.3.1.>

3. 정년을 2년 남겨둔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책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1., 2024.11.4.>
4. 비정년트랙교원의 책임시간은 비정년트랙교원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<신설 2008.8.13.><개정 2012.1.31., 2016.10.28., 2024.11.4.>
5. 대학원을 포함하여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의 강의시간을 책임시간에 포함할 지 여부는 강의료 지급 자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<개정 2012.1.31., 2023.12.18>
6. 신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최초 임용 후 1년 이내에 학부(과)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3시간까지 감면될 수 있다. <신설 2008.8.13., 2010.10.8.>
7.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책임시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감면될 수 있다. <신설 2008.8.13.>

제 2 장 강사료 산출 및 지급

제4조 (강의단위) 강의단위는 수강인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08.8.13., 2010.10.8.>

1. 소단위 : 60명 이하
2. 중단위 : 61명 이상 120명 이하
3. 대단위 : 121명 이상

제5조 (강의료 지급) ① 강의료는 다음 각 호 1의 초과 강의료, 시간 강의료 및 계약학과 강의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강의료 지급 대상이 되는 과목 및 강의시간은 매 학기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정규 시간표에 배정된 것에 한한다. <개정 2008.8.13., 2014.8.6., 2019.8.26.>

1. 초과 강의료는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외의 초과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의료 <개정 2019.8.26.>
 2. 시간 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의거 해당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<개정 2014.8.6., 2019.8.26.>
 3. 계약학과 강의료는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에서 개설한 강의를 담당한 전임교원,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<신설 2008.8.13.><개정 2009.6.1., 2019.8.26.>
- ② 제4조의 중단위 이상 수강과목은 수업개시 4주선을 기준으로 하며, 수강인원 61명부터 1명 초과단위로 시간당 강의료의 1%를 추가 지급하되 80%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단, 교과목의 특성 상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8.13., 2010.10.8., 2018.3.1., 2019.8.26.>
- ③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과 강사료를 지급하며, 학년도 기준으로 2학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연구년 실시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1학기에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8.13, 2009.6.1., 2010.10.8., 2017.6.19., 2019.8.26.>
1.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지급 시수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9.8.26., 2021.3.29>
 2. <개정 2019.8.26.> <삭제 2021.3.29>

- 3.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교육중점교원(어학담당 외국인교원 포함)에게는 초과시간 전부에 대하여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. <개정 2019.8.26.>
- 4. 특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인력양성사업 강의의 초과시수는 총장 허가하에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29.>
- 5. <신설 2021.3.29.>, <삭제 2023.12.18.>
- ④ 시험기간,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한 휴강일 때에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8.26.>
- ⑤ <개정 2008.8.13., 2016.10.28., 2019.8.26.> <항 삭제 2023.1.16.>
- ⑥ 삭제
- ⑦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9.8.26.>
- ⑧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전임교원이 당해 학년도 학부책임강의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해 학년도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7.6.19., 개정 2019.8.26., 2024.11.4.>

제6조 (강의료 산출) 강의료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8.26.>

- ① 실습강의 강의료는 2시간을 일반강의의 1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한다. 다만, 특정 교육 내용에 대한 실습강의는 일반강의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8.26.>
- ② 전 1호의 단서의 경우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수는 일반강의로 계산하고,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도 일반강의의 시간으로 계산한다. <개정 2019.8.26.>
- ③ 조종실기 지상학습 시간은 일반강의의 시간으로 인정하고 최대 6시간까지 강의료를 지급한다. <개정 2008.8.13., 2019.8.26.>
- ④ 강의료는 주 단위로 배정된 강의 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 <개정 2008.8.13., 2016.10.28., 2019.8.26.>
- ⑤ 시간 강의료는 당해년도 강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. <개정 2019.8.26.>
- ⑥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료 산정은 초과 강의료가 높은 개설단위의 시간을 우선으로 하고, 개설단위간 강의료가 동일한 경우 특수대학원, 일반대학원, 학부 순으로 계산한다. <신설 2008.8.13.><개정 2016.10.28., 2017.6.19., 2019.8.26.>

제7조 (지급일) 강의료 지급일은 익월 5일에 정기로 지급하되,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변경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8.26.>

제 3 장 특별강의료

제8조 (계절수업의 강의료) ① 전임교원의 계절수업 강의료는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8.8.13., 2019.8.26.>

- ②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경우는 정규학기 중 강의료와 동일하게 한다. <개정 2008.8.13., 2019.8.26.>

제9조 (방학 중 및 일과시간외 수업의 강의료) ① 정규학기 중의 수업의 연장으로 방학 중에 정기적

으로 실시하는 실기 및 실습교육 등에 대한 강의료는 정규학기의 일반 강의 강의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<개정 2008.8.13., 2019.8.26.>

- ② 학부(과)의 주관으로 개설하는 선수과목 강의 등 방학 중 또는 일과시간 외에 개설되는 강의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규 학기의 일반강의 강의료 기준을 적용하여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08.8.13., 2019.8.26.>

제10조 (부속기관의 강의료) ① 본 대학교 부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에 대한 강의료로서 강사의 직급은 <별표 3>과 같이 구분된다. 단, 비행교육원의 조종실기교수 등 비행교관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08.8.13, 2009. 11.13, 2013.7.30., 2019.8.26.>

- ② 강의료는 당해년도 강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.<신설 2009. 11.13., 개정 2019.8.26.>

제11조 삭 제 <2008.8.13.>

제12조 (특별 강의료) ① 특별초빙 강의료는 본 대학교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 단기강좌 혹은 특별강의를 위해 초빙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로서 당해년도 강의료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.<개정 2016.10.28., 2019.8.26.>

- ② 제1항의 강사 중 <별표 4>에 해당하는 자는 특급강사로 분류하며 특급강사의 강의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08.8.13., 2009.11.13., 2016.10.28., 2019.8.26.>
- ③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특별강의를 수행할 경우 특별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08.8.13.> <개정 2019.8.26.>
- ④ 본 대학교에 조종 실기교수 등의 직분으로 근무하는 자가 학부(과)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, 강의 시수에 대하여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08.8.13., 개정 2019.8.26.>
- ⑤ 위탁사업 등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. <신설 2009. 11.13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10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제3조제3호에 의거 책임시수가 감면된 교원은 주당 12시간(책임시간 포함)까지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.
1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1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(단, 개정된 조항은 2010학년도 2학

기부터 적용한다.)

1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(단 개정된 조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)
1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.
1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1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1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1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1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19일 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0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,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되,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.
2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.
2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별표 1> <삭제>

<별표 2> <개정 2009.6.1, 2010.10.8., 2013.7.30., 2015.2.3., 2016.10.28., 2017.6.19., 2018.3.1., 2020.3.9., 2021.3.29., 2021.4.26., 2023.1.16., 2024.11.4.>

전임교원의 책임시간*

구분		책임 시간	학부책임 강의시간
보직	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, 행정처장	학년도별 주당 6시간	학년도별 주당 3시간
	학부장, 산학협력단 부단장	학년도별 주당 10시간	학기별 주당 이론강의 3시간
	부학부장, 학과장, <삭제 2021.3.29.>	학년도별 주당 12시간	
	부속기관장(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소속 센터 제외). 센터장 및 부센터장	학년도별 주당 12시간	
	학부 전공주임교수, <삭제 2021.3.29.>, 연계/융합전공 주임교수, 한국어교육원 주임교수	학년도별 주당 14시간	
정년 트랙	일반교수	학년도별 주당 15시간	학기별 주당 이론강의 3시간
	정년퇴직 직전 4개 학기 해당 교원	학년도별 주당 9시간	
	간접비 수주 등 연구실적 우수 교원 ***	학년도별 주당 9~12시간	
	과제 협약 등에 따라 책임시간을 감면받는 전임교원 (과제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른 책임시간 감면을 총장이 승인한 경우)	학년도별 주당 9~12시간	
비정년 트랙	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	따로 정함	
	교육중점교수		
	교육중점교수(어학담당 외국인교원)		

* 책임시간은 연간 기준 주당시간을 기준으로 함. 단, 책임시간이 학년도별 주당 6시간 이하인 교원의 학부책임강의시간은 연간 주당 3시간임

** 연구실적이 우수하여 학교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여실적에 따라 연간 기준 최대 주당 6시간까지 감면 가능함

< 별표 3 > <신설 2009. 11.13><개정 2012.10.31., 2013.7.30.>

부속기관 강사의 구분

구 분	대 상
일반(가)	◦ 특별초빙강사로서 ‘일반(나) 및 일반(다)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일반(나)	◦ 항공관련 안전관리·보안과정 프로그램 교육강사 ◦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
일반(다)	◦ 기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강사 ◦ 본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

< 별표 4 > <신설 2009.11.13>

특급강사의 구분

구 분	대 상
특급(가)	◦ 해당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(현직 장·차관, 국회의원, 대학총장 등)
특급(나)	◦ 전직 장·차관(급), 국회의원, 대학총장 ◦ 대기업체 대표(연수원장, 연구소장 포함) ◦ 국영기업체장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◦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
특급(다)	◦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◦ 예술인, 종교인 및 언론인 ◦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 및 중역 ◦ 판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 ◦ 연구소 연구위원(3년이상 경력자) ◦ 3급이상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 ◦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